

공고내용

페이지 : 1/2

게재(요청)일자	2015-05-15	담당부서	자치행정과	이동진
고시공고구분	공고(입법예고)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5-797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		
내용	<p>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</p> <p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</p> <p>2015년 5월 15일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</p> <p>1. 개정이유</p> <p>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간 프로그램 수강료 격차를 줄이고,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</p> <p>2. 주요내용</p> <p>가.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개정(안 별표1)</p> <p>나. 프로그램 폐강시 호응도 제고기간 단축(안 제7조제4항)</p> <p>- 수강인원 20명 미만시 호응도 제고기간 : 2달 → 1달</p> <p>다. 수강료 사용용도에 자원봉사 실비 추가(안 제9조제1호)</p> <p>라. 강사료 부족분 청구시기를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(제11조제3항)</p> <p>마.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용어 및 서식 개정(제9조, 제27조, 제32조, 별지1,2,3,5,6,8호)</p> <p>바. 기타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남구청장(참조: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?반 여부 및 그 사유)</p> <p>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</p>			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135-705),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

강남구청 자치행정과

내용

- 담 당 : 이동진

- 연락처 : 전화 02)3423-5214, 팩스 02)3423-8823

- E-mail : borges@gangnam.go.kr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끝.